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방해행위를 반복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0조의2제1항).
-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수시 적성검사 요청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의 명확화 및 요청·판단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 안 제89조의2제4항은 경찰공무원이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이 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경찰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경찰청장이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방법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할 개인정보의 내용·통보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직계가족 등에 의한 부당한 요청을 방지하고 경찰청장이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 사유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명확히 하고,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와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 ③ (생략)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u>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요청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u> 경찰청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u>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u> ----- -----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u>방법</u> ,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u>개인정보의 내용·통보 방법</u> ,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⑤ ----- ----- <u>사유 및 방법</u> ,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u> ----- -----
---	--

2. 부칙의 시행일 수정

- 안 제89조의2는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하면, 경찰청장이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검사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경찰청에 따르면, 제3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을 접수·검토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요청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처리되고, 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요청의 접수·검토 및 개인정보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전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확대와 요청 방법, 개인정보의 내용·통보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 안 부칙 제1조에 대한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u>시행</u> <u>한다.</u>	제1조(시행일) ----- ----- ----- <u>시행</u> <u>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u> <u>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최 기 도)